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1년 12월 21일(화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1. 12. 20.(월) | 담당부서 | 가스산업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김진 과장(044-203-5230) | 담 당 자 | 조성경 서기관(044-203-5231)<br>정대우 주무관(044-203-5236) |

# 「석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12.21(화) 국무회의 통과

**-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**

**-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**

□ LNG(액화천연가스)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**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**하는 경우, 해당 LNG에 대한 **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**하는 내용의 **「석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이 12.21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.

* 개정 조문 :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(부과금의 환급)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

> 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
> (부칙 : '21.1.1.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)

** 벙커링(bunkering)은 선박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뜻하며, LNG벙커링은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

○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. 하지만, **그간**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·정제업자가 수출입·생산한 **'석유제품'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**됨에 따라, **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.**



○ 금번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**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**됨에 따라,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**<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>**

| 구분 | 세율 | 회계 |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세 | 도입국에 따라 0~3% | 국세 | 환급 | 「관세환급특례법」 제3조 |
| 개별소비세 | 42원/kg | 국세 | 환급 | |
| **수입부과금** | **24.242원/kg** | 에특회계 | **'21.1.1일 물량부터 환급** | - |
| 안전관리부담금 | 3.9원/$Nm^3$ (약 4.9원/kg) | 에특회계 | 미환급 |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|

□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*로 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**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**하여,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「도시가스사업법」을 개정·시행('20.8.5.)하고, **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**한 바 있다.

* '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.5%에서 0.5% 이하로 제한
→ 업계는 **①저유황유 사용, ②스크러버(저감장치) 설치, ③LNG 추진선 도입** 등으로 대응중

○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, 국내 업계의 **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**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**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**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**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**할 수 있어 **친환경 경제로의 전환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($SO_x$) 100%, 질소산화물($NO_x$) 40~70%, 이산화탄소($CO_2$) 25% 감축효과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*을 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며,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.

*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대우 주무관(☎ 044-203-5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